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39
----------	-----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숲은 경마장과 골프장이었던 뚝섬 일대를 수많은 개발의 욕구를 극복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공원 조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금을 내고 나무를 심어 만들었으며, '05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나. 공원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시설과 공간 제공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리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양방향, 맞춤형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게 됨
- 다. 조성 당시부터 다양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된 서울숲의 관리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공개적으로 위탁관리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숲 개요

- 소재지 : 성동구 뚝섬로 273 일대(성수동1가 685-20)
- 면적 : 1,156,498 m^2 (관리면적 480,994 m^2)
- 개원일 : 2005.06.18.
- 이용자수 : 7,580천명/년
- 주요시설 : 생태숲, 가족마당, 습지생태원, 곤충식물원, 사슴방사장 등

나.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016.02. ~ 2018.12.(3년 이내)
- 위탁방법 : 공개모집(비영리단체)
- 소요예산 : 4,784백만원/년
- 주요 위탁사무 내용(법정사무 제외)
 - 시설의 안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 동물, 식물, 동물사, 녹지 및 공원생태계 관리
 - 공원 청소,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
 - 시설이용 승낙 및 이용료 징수
 - 재산관리 및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 곤충식물원·나비정원 운영
 - 서울숲위원회 운영
 - 이용자모니터링 및 공원이용 통계·평가

다. 민간위탁 효과

- 공원의 관리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공원 관리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기부금 등의 기금 마련을 통하여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서울숲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 민간의 전문지식과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③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협력팀 김동완 (☎2133-2036)